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01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서천호·김선교·우재준

김예지 · 정희용 · 이양수

정성국 · 최보윤 · 서명옥

진종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 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 106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제106조의2(농업 · 임업 ·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등) ① -----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 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 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 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 -----2031년-----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 고, 제2호는 2025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 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② (생 략) ② ~ ② (현행과 같음)